

수 의 사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1. 개정이유

현재 동물병원 주요 진료비에 대한 지역별 평균값 등을 공개중이나,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체감성 높은 정보 제공을 위해 정부 홈페이지 상의 공개 범위를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병원 진료비용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로 기존 지역별 진료비 평균값 등 외에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추가(안 제20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제20조제1항제1호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각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등) ① ----- ----- -----.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각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전국 단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 및 시·군·자치구 단위별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1. <u>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각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u>
2. 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현행 제1호와 같음)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연 락 처	(044) 201 - 2652, 2653